

복지의존의 개념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실증 연구

정진경*

I. 서 론

복지의존은 미국의 공공부조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학문적 주제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등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복지개혁 논쟁에서 오랫동안 정책 논쟁의 핵심용어가 되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존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나라 복지의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1960-70년대의 국가적 빈곤시대에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약한 보호수준의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1982년에 이르러서야 생활보호사업에 ‘자활’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 때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생활보호사업은 빈곤층의 생활보호와 자활자립의 도모라는 기본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생계비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와 자활사업의 강화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비율이 7%(‘98년 기준)를 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복지의존은 어느 누구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복지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복지정책의 강화가 복지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며 시장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노대명, 2001 : 4, 경향신문 2000.5.6일자 13면 : 중앙일보, 2001.3.19일자 3면 ; 2003.3.9일자 37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시점에서, 본 제도가 취하고 있는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보충급여방식’과 ‘통합형 급여방식’ 및 ‘근로유인책의 부재’라는 몇 가지 특징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마저도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등 수급자들로 하여금 빈곤의 함정이나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개연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미곤, 2001 : 46 ; 2002 : 51, 박능후, 2003 : 53-59. 노대명, 2003 : 25). 한편 정책현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뿐 아니라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의존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및 정책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복지의존’은 이미 ‘부정적 뉘앙스’를 띤 ‘문제’로서의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 듯 하다.

1997년 이후 국내 공공부조 분야의 연구경향에서도 빈곤지속기간, 빈곤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되면서 이러한 논문들에서 ‘복지의존’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박윤영, 1998 ; 이원익, 1999 ; 황덕순, 2002, 유태균, 2003 :106 재인용, 김경희, 2004).

미국식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및 외국의 정책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복지의존이라는 용어의 보편화는 시간의 문제일 듯하다. 그러나 용어의 정확한 개념정의와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또한 외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특성 차이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차용하는 것은 우려될 만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복지의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복지의존을 분석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에게 복지의존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공공부조수급자에게서 복지의존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현재 제도적 차원 및 정책현장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복지의존이 실증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존과 복지의존

Titmuss(1959)는 '의존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상태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의존을 자연적 의존(natural dependencies)과 인위적 의존(man-made dependencies)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적 의존은 아동이나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인 능력이 미성숙하거나 감퇴 혹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자연적 의존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요구로서 논쟁의 필요가 없으며 비정치적이다. 그러나 인위적 의존은 실업이나 강제퇴직 등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 금전, 고용상실 등 권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Titmuss는 의존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의존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의존의 원인이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Glasser(1978)는 Titmuss의 자연적 의존을 내생적(intrinsic) 의존, 인위적 의존을 외생적(extrinsic)의존이라 지칭하였다. 외생적 의존은 권력과 자원의 배분 및 통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표적 예가 복지수급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즉, 복지수급자들이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 외적 요소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다(Zinn, 1984 재인용).

한편, Noel and Rita(1982 : 55-56)에 의하면, 의존이란 필요한 심리적 혹은 물질적 자원을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이 ‘강화된(enforced)’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자선이나 호의에 일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움의 과정의 요소이거나 단계로 허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목표(자립)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대상에 의지’하는 것과 아예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의존은 더 이상 새로운 의존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존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에서 목표가 되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립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사업이나 복지서비스의 목적이자 ‘이상적’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내재된 의존적 성향은 보다 강하게 복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에서 정말 의존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Titmuss와 Glasser가 의존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상태로서 정의한 것과 달리 복지의존을 허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서 일정한 가치가 개입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Robert L. Barker(1987)는, 의존이란 생계나 생활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의지하는 상태로, 양육, 의사결정, 안전, 보호, 주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존 중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성인에게 이것이 지나칠 때는 신경증, 퇴행 혹은 정서적 불안정의 증상이 되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복지의존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바람직한(혹은 허용된) 복지의존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분에 따른 또 다른 낙인(blaming victim)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정의해야 할

것임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Smith(2001)는 의존이란 한사람 또는 어떤 집단이 광범위한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결핍된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며, 복지의존 역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하였다.

또, 복지의존 역시 사회적 보호규범 속에서 수급자와 정부와의 현금과 기타 서비스와의 교환관계(Zinn, 1984)인, 즉 지극히 객관적인 사회적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지의존(dependency)은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의존적 상태, 즉 자립의지의 부족이나 개인책임의 부족 등 도덕적 심리적 특성에 의해,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생활양식(lifestyle)까지 포함하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개념이다(Smiley, 2001).

이렇게 복지의존이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존’이란 용어의 의미론적 변화이다. 즉, 의존은 역사적으로 특정 시대의 지배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되는 맥락이나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Fraser and Gordon, 1994). 16세기-17세기 유럽 봉건사회에서의 의존이란 광범위한 사회적 예속관계를 포함한 보편적 사회적 상태이었으나 18세기 19세기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청교도적 윤리가 지배하면서 근면한 노동을 통한 개인의 자립이 강조되었고, 복지의존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의 악처럼 문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20세기 정신의학의 발달은 복지의존을 병리적 현상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으며, 보수주의 정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복지의존은 더욱 낙인화 된 것이다.

둘째, ‘복지의존’이 정책논쟁의 용어로 사용되는 과정에서의 변화이다.

Moynihan(1986)은 “빈곤하게 된 것은 객관적 상태이며 상당부분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의존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인 상태이며, 아동에게는 정상적인 것이나 성인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두발로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설명은 ‘복지의존이 개인의 도덕적 심리적 특성에 의해 결과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Nathan(1986:5)은 “주요 정책 전문가들이 복지의존은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라는 동의하고 있으며 복지의존(공공부조수급을 의미하고 있음)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오랜기간 동안 하위계층의 의식과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수급자 스스로 고립되고 낙인화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Moynihan과는 달리 ‘복지에 의존하게 된 결과’를 언급한 말로서 이 의미가 그대로 복지의존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miley, 2001).

결국 Moynihan과 Nathan의 설명은 자립의지와 개인책임의 부재는 복지수급이라는 객관

적 의존을 만들어 내고, 또 역으로 이러한 공공부조수급이라는 객관적 상태가 도덕적 심리적인 부정적 특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의존’은 언어적 개념적 연구과정에 의해 정립되기 보다 정책논쟁이나 실증연구 측면에서의 다양한 측정의 형태로 발전되어 옴으로서 그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복지의존’은 ‘공공부조수급’, 혹은 ‘공공부조를 이용하는 것’(welfare use)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 용어는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어왔다(Delores, 1995 ; Smiley, 2001). 그런데 공공부조 수급 자체를 지칭하는 복지의존은(dependence), ‘자신과 가족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정이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순수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지의존(dependency)은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심리적, 태도적 의존상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Smiley, 2001).

결국 ‘공공부조 수급’이라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의존’(dependence)과 일련의 태도적 행동적 특성으로서의 ‘의존’(dependency)이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면서, 복지의존은 용어의 정의와 그 안에 폭넓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의존의 측정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측정방법은 수급기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총 수급기간, 재진입율, 복지탈피기간, 탈피율 등의 측정을 통해 기간의존의 측면에서 복지의존을 다루고 있다(Gottschak and Moffit, 1994). 또 복지의존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구수입중 현금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등의 재정 혹은 급여의존 측면에서 복지의존을 다루고 있다(Gottschak and Moffit, 1994 ; Cheng, 2002). 한편, 기간이나 급여와 같은 계량적 정의로는 태도나 심리측면의 복지의존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나 급여와 함께 공공부조수급자의 태도적 및 심리적 특성을 함께 측정하여야 함이 제기되었다(Nakazato, 1992:1). 이에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의존율과 함께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Tang and Smith-Brandon, 2001 ; Kalil et al, 2001)나 가족가치관(Dolinsky et al, 1989) 및 스트레스나 우울증(Krinilzky, 1990 ; Kalil et al, 2001),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Kunz and Kalil, 1999 ; Tang and Brandon, 2001) 등이 측정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실증연구상에서의 다양한 측정방법은 ‘복지의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개념적 차원과 측정에서의 체계적인 종합화가 필요함을 인식시켰다.

2. 복지의존의 측정 :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복지의존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Susan, 1999). 특히 복지의존의 가장 보편적

인 측정방법은 개인의 복지수급경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장기간의 수급기간 또는 빈번한 재진입율로 복지의존을 설명하는 것이다(Gottschak and Moffitt, 1994). 또한 수급경력은 장기간의 수급을 받고 재진입률이 낮은 경우(state dependency)와 단기간 수급 받고 재진입률이 높은 경우(heterogeneity)로 구분될 수 있다.

복지의존은 수급기간 뿐 아니라 복지급여 애착 또는 현금급여액을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복지급여에 대한 애착이 크거나, 월평균 가구수 입증 공공부조에 의한 현금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 역시 복지의존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Gottschak and Moffitt, 1994 ; Susan, 1999, Cheng, 2002).

한편, 복지의존은 복지수급자의 태도와 가치 및 심리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Garfinkel & McLanahan, 1986 ; Nakazato, 1992). 그러나 앞서 수급기간이나 복지급여와 같은 계량적인 정의는 복지의존의 태도측면을 알아내는데 실패하고 따라서 복지의존의 특성을 잘 못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는 복지의존이 공공부조 이용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용어로서 어떠한 단일 측정에 의해서도 복지의존의 특성을 간명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Nakazato, 1992)

이에 대해 복지의존의 개량적 측정과 수급자의 심리적 혹은 태도와의 관계를 통해 복지의존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이 가장 많이 측정되고 있었으며, 태도 및 가치측면에서는 근로윤리가 대표적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의 복지의존은 공공부조수급의 객관적 측면과 수급자의 주관적 측면사이에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Nakazato, 1992 ; Smiley, 2001).

즉, 수급자의 부정적인 태도 및 심리적 특성은 장기 수급기간이나 빈번한 재진입률과 관련이 있으며(Kunz and Kalil, 1999 ; Edwards et al, 2001), 높은 급여수준 또한 수급자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 및 태도와 관련이 있다(Mead, 1984 ; Tanner et al, 1997)는 것이다.

한편, 객관적 측면 내에서의 수급경력과 복지급여의 관계는, 높은 급여수준은 장기 수급기간이나 재진입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Hoynes and Mccurdy, 1994 ; Tanner et al, 1997). 그리고, 주관적 측면내에서의 관계 역시 낮은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인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심리적 특성이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Garfinkel & McLanahan, 1986 ; Delores, 1995 ; Kalil et al, 2001)으로 정리될 수 있다.

3. 복지의존의 개념과 측정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복지의존의 개념적, 실증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통적 특징을 정리함으로서 복지의존의 개념적 특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복지의존은 빈곤층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 및 그 수급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의존은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급여 수급자에게 보다는 공공부조수급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Fraser and Gordo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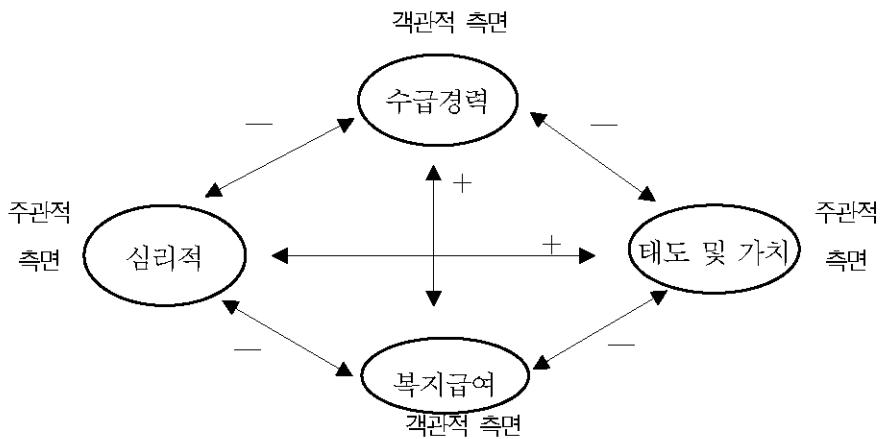
둘째, 복지의존은 단순한 공공부조수급 자체라기 보다 공공부조수급을 둘러싼 복합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복지의존은 공공부조 이용 여부 보다는 이미 공공부조 수급권내에 진입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상태로, 비록 복지의존과 복지수급은 밀접한 과정이긴 하나 구분되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Ono and Becerra, 2000).

셋째, 결국 복지의존의 다양한 특성은 객관적 측면(objective side)과 주관적 측면(subjective side)으로 구분될 수 있다(Smiley, 2001). 즉, 객관적 측면에서의 복지의존 특성은 수급기간이나 현급급여 의존율과 같은 공공부조 수급자체와 관련된 개량적 측면이며, 주관적 측면에서의 복지의존 특성은 공공부조 수급과 관련된 수급자 개인의 태도적 심리적 특징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관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급자의 심리적 태도적 특징은 독립적으로 복지의존을 측정하기 보다는 객관적 측면과의 역(-)의 상관성 속에서 측정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Nakazato(1992)는 보다 포괄적으로, 복지의존이란 ①지속적인 복지수급, ②복지수급의 세대간 전이, ③복지수급-가족구조 사이의 부적(adverse)관계, ④복지수급-태도/동기 사이의 부적(adverse)관계의 4가지 영역 모두에서 그 정도가 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복지의존은 공공부조수급자가 자신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공공부조수급권내에 지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상태이며, 이러한 복지의존은 객관적 측면(objective side)과 주관적 측면(subjective side)에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때 객관적 측면에서는 수급경력과 현급급여액 비율, 주관적 측면에서는 수급자의 태도와 심리적인 면에서 특징을 나타내며, 복지의존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상호 부(-)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복지의존의 제 측면간 상관관계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공공부조수급가구로 1962년 생활보호제도 시행 이후 연구시점까지 계속 수급받고 있는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신규 수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수급 받고 있는 가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며,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2.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중 대략 10%에 해당하고 있었다(서울시, 2003).

본 연구의 표집단위는 가구이며,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구주 면접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가구주의 배우자 등 만 18세 이상의 중요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분포자료를 표집틀로 하여 수급대상이 가장 밀집된 상위 5개구를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5개 구 내에서도 가장 밀집지역인 영구임대단지 1개동과 일반주거지역 1개동을 각각 선정하여 총 10개 동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구는 노원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강남구이며(서울시 전체 수급가구의 35.4%), 10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가구는 7,606가구(서울시 전체 수급가구의 9.7%)이다. 마지막 표본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동사무소의 수급가구 전체목록에서 수급유형에 따라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를 나누고, 각 수급유형에서 가구유형을 고려한 비례할당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구자가 할당한 표본자료를 참조하여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표본수는 서울시 5개구 10개동 616가구이며, 사전조사에서 25가구, 본 조사에서 502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사전조사를 제외한 본 조사의 조사완료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표 1>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조사완료율

자치구 (수급가구)	동 (수급가구)	할당표본수	실제 표본수	조사완료 (%)
5개구(27,574)	10개동 (7,606)	618	616	502 (85.0%)
노원 (8,612)	중계3동 (1,422)	125	125	113 (90.4%)
	상계3동 (430)	32	39	27 (69.2%)
강서 (7,870)	등촌3동 (2,400)	178	170	122 (84.1%)
	공항동 (230)	19	19	11 (57.9%)
강북 (3,635)	변2동 (500)	50	50	44 (88%)
	미아2동 (200)	19	19	15 (78.9%)
중랑 (3,855)	신내2동 (531)	38	38	32 (84.2%)
	중화2동 (198)	19	20	16 (80%)
강남 (3,602)	수서동 (1,500)	125	120	106 (88.3%)
	역삼1동 (95)	13	20	16 (80%)

2)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전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설문조사와 해당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면접설문조사는 일부 조사대상자의 특성 - 고령, 장애, 무학 등으로 인한 낮은 문장이해력 등 - 을 고려하는 동시에 설문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조사문항에서 수급유형이나 현금수급액, 가구수입 등 객관적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먼저 조사도구인 1차 설문지의 조사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한 액면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03년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등촌3동과 신공덕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 27가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전문조사원 3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전조사 실시 후 사전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문조사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하였다. 특히 본 설문지중 일에 대한 태도 조사에 대해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거쳐 최종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접 설문도구를 완성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 앞서 전문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을 통하여 숙련된 조사경험이 있는 전문조사원 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최저 5년에서 최대 10년의 조사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원 교육은 2003년 5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조사방법, 설문지에 대한 숙지, 조사과정 중 면접자의 태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해 등을 함께 공유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바람직 성 편견(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한 부정확한 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면접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면접조사원에 대한 교육 후 각 면접조사원에게 10개의 조사지역을 할당하고, 조사대상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조사는 2003년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17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문면접조사원은 해당 지역에서 조사대상자와 사전에 전화약속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주 내지는 중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주 부재 시 평균 3차례의 추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주 장기 출타, 장기 입원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지역의 면접조사를 마친 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수급유형 등의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친 후 응답결과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하였다.

2. 복지의존의 정의 및 변수 측정

1) 복지의존의 개념정의

본 연구에서 복지의존이라 함은 자신 또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공적급여로 충당하기 위해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복지의존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구조로 공공부조수급과 관련된 객관적 측면과 수급자의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의존의 객관적 측면은 장기간의 수급기간이나 빈번한 재진입율과 같은 수급경력에서의 의존과, 가구 수입 중 공적 현금급여 비중이 높은 급여의존 등을 의미한다. 또 복지의존의 주관적 측면은 복지의존의 객관적 측면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으면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거나, 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복지의존의 측정

① 수급기간

총 수급기간은 1962년 생활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 공공부조 대상으로 선정된 연도에서 연구시점('03.6월 기준)까지의 총 기간중 수급대상에서 탈출 혹은 탈락했던 기간들을 제외 한 순수 수급기간으로 측정하였다.

② 현금급여 의존율

현금급여 의존율은 수급가구의 월평균 총수입(가구 임금수입+기타 수입+공적 현금급여 수입) 대비 공공부조에 의해 지원받는 현금급여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 임금 수입과 기타수입은 매월 수입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임금수입을 측정하였다.

공적 현금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 역시 매월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 3개월 평균 지원액을 측정하였다.

③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비교적 높게 인정되고 있는 Rosenberg('86)의 10항목 4점 척도($\alpha = .69 \sim .87$, Tang & Smith-Brandon, 2001)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내적신뢰도는 $\alpha = .74$ 였다.

④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척도는, 독립/자립, 일 자체의 중요성, 근면과 성공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에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요인에 의한 누적 설명력은

54.9%이고 내적신뢰도는 $\alpha=0.79$ 이다.

3) 기타변수

공공부조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복지의존 하위 변수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장애유무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가구유형, 요보호가구원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현재 취업유무 등의 가구 및 경제적 변수, 공공부조 최초 수급연령, 수급유형 등의 공공부조수급변수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사례 502개중 가구주 응답 370사례와, 근로가능 수급자 103사례이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을 구분한 이유에는

첫째, 미국에서의 복지의존은 인구특성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 중 특히 TANF 수급자(근로가능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인구학적 가구적 특성이 모두 총망라된 단일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일차적인 수급자 전체(가구주 370)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조수급자 가운데 특히 근로가능 수급자는 복지의존 논쟁에서 주요한 정책대상자으로 이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첫째,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의 전체적인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설명변수들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수급자와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해 복지의존 네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의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의존 특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얻고자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 및 가구원 요인, 경제적 요인, 공공부조수급 요인에 따른 다양한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지의존의 개념구조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복지의존 제 측면간 상관관계 특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복지의존 네 변수간 -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 - 상관관계 검증(Pearson r)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공공부조수급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공공부조수급 가구주(N=370)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129명(34.9%), 여성이 241명(65.1%)으로 여성이 2배 가량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의 성별 분포에 따르면 여성 수급자가 남성 수급자에 비해 1.4배 정도 많은 것(보건복지부, 2002 : 87)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에 여성 수급자가 다소 많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가구주 전체 평균연령이 60세였으며, 40세 이하가 7.8%, 41세 이상 50세 이하 24.6%인 반면, 61세 이상의 가구주는 52.7%로 노인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결혼상태로는 미혼 5.9%, 기혼 18.4%였으며, 이혼 및 별거가 28.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 사별은 47%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무학이 27.8%, 국졸이하가 30.5%로 과반수 이상이 저학력층이었고, 중졸 16.8%, 고졸 20.5%, 전문대졸 이상이 4.3%를 차지했다.

건강과 관련된 특성으로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이상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응답한 경우는 24.3%에 불과했다. 객관적 건강상태에서는 71.9%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24.3%는 장애를 가진 수급자였다. 주관적 혹은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으로는 일반가구가 20.5%, 노인가구가 40%로 많았으며, 모자가구 20.8%, 부자가구 4.1%, 장애가구 11.9%, 기타 가구가 2.7%였다. 본 조사의 가구유형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조수급자의 가구유형인 일반가구 37.0%, 노인가구 33.9%, 모자가구 10.1%, 부자가구 2.8%, 장애인가구 14.2%, 기타 2.0%(보건복지부, 2002)와 비교해 볼 때 일반가구 조사율이 17% 포인트 낮은 반면, 모자가구, 노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내 중증장애나 만성질환 등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9.5%였다.

공공부조수급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공공부조급여에 의해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제외한 가구 수입에 있어서는 월평균 가구수입이 약 221.6천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구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58.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50만원 미만이 29.7% 등 대다수가 낮은 수입에 머물러 있었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0.5%,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1.4%에 불과했다.

이들 공공부조수급 가구주의 현재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2.1%만이 현재 취업중이며

77.8%는 비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유형은 86.8%가 일반수급자였으며, 조건부수급자는 13.2%였다. 이는 2000년 10월 우리나라 전체 조건부수급자인 6.7%에 비해(보건복지부, 2002 : 26) 본 조사에서 조건부수급자가 2배 정도 높게 조사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가 최초로 공공부조수급을 받을 당시 연령으로는 40세 이하가 26.0%, 50세 이하 24.3%, 60세 이하 13.8%였으며, 61세를 넘어서 공공부조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35.9%에 이르렀다. 최초 공공부조 수급시 평균연령은 52세로 대부분 중년 이후부터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공공부조수급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N=370(100%)

변수	빈도 (%)	변수	빈도
성별 남 여	129 (34.9) 241 (65.1)	가구유형 일인가구 노인가구 모자기구 부자가구 장애인가구 기타가구	76 (20.5) 148 (40.0) 77 (20.8) 15 (4.1) 44 (11.9) 10 (2.7)
연령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이상	29 (7.8) 91 (24.6) 55 (14.9) 195 (52.7) 평균 : 60세	요보호가구원 유무 있다 없다	72 (19.5) 298 (80.5)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이혼, 별거)	22 (5.9) 68 (18.4) 174 (47.0) 106 (28.6)	월평균 가구수입 수입 없음 50만원 미만 50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16 (58.4) 110 (29.7) 39 (10.5) 5 (1.4)
학력 무학 국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	103 (27.8) 113 (30.5) 62 (16.8) 76 (20.5) 16 (4.3)	현재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82 (22.2) 288 (77.8)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	41 (11.1) 49 (13.2) 280 (75.7)	공공부조수급유형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321 (86.8) 49 (13.2)
만성질환 유무 1개 이상 만성질환 없음	266 (71.9) 104 (28.1)	최초 수급연령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초과	96 (26.0) 90 (24.3) 51 (13.8) 133 (35.9) 평균 : 52세
장애 유무 장애 비장애	90 (24.3) 280 (75.7)		

2) 근로가능수급자 현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18세 이상 62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 및 질병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를 근로능력자로 판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 29). 이러한 기준을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502)중 만60세 이하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근로가능 수급자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중 만 60세 이하의 수급자는 총 27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증장애가 있어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25명을 포함하여 총103명이 근로가능한 수급자로 분류되었다. 근로가능 수급자(103명)는 수급자 전체(502명) 대비 약2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 복지의존 하위 변수별 기술적 분석결과

1) 수급기간

복지의존의 객관적 지표 가운데 하나인 총 수급기간은 평균 8.5년이었으며,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40년 8개월로 나타났다. 최대 40년 8개월은 1962년 생활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공공부조수급대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급기간 분포는 1년 이하 3.8%, 1년에서 5년 이하 32.7%, 5년에서 10년 이하 29.2%로, 전체의 66.2% 정도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공공부조 수급을 받아왔으며, 나머지 34% 정도에 이르는 수급자는 10년을 초과한 장기간 동안 수급대상으로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가능 수급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6.7년으로 수급자 전체의 평균 기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가능 수급자의 경우 46.6%가 5년 이하의 수급기간에 있었으며, 10년을 초과한 수급자는 26.2%였다.

<표 3> 공공부조 수급기간

구 분	가구주 전체 (N=370)		근로가능 수급자 (N=103)	
	빈도 (%)	비고	빈도 (%)	비고
1년 이하	14 (3.8%)		3 (2.9)	
1년 ~ 5년 이하	121 (32.7%)	최소 : 10개월	45 (43.7)	최소 : 2개월
5년 ~ 10년 이하	108 (29.2%)	최대 : 40.8년	28 (27.2)	최대 : 19.6년
10년 ~ 20년 이하	102 (27.6%)	평균 : 8.5년	27 (26.2)	평균 : 6.7년
20년 초과	25 (6.8%)		-	

이와 같은 수급기간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집단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가구주의 평균 수급기간은 9년, 남성가구주의 평균 수급기간은 7.7년으로 여성가구주의 평균 수급기간이 남성가구 주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에 있어 여성수급자가 남성수급자에 비해 특히 노년기에 2배 정도 많으며,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7년 이상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보건복지부, 2002 : 86). 즉 여성수급자의 수급기간이 남성수급자보다 긴 원인 중 하나는 평균수명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런 수급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현재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을 비교해보면 61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수급기간은 10.5년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40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수급기간은 3.4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오랜기간 동안 공공부조수급을 받아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에 있어서는 무학인 경우의 평균 수급기간(11.3년)이 국졸(8.4년)이나 중졸(7.3년), 고졸(6.2년), 전문대 이상(7.8년)의 학력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인 경우의 평균 수급기간이 10.2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 7.5년 및 이혼 또는 별거 6.6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즉, 노인가구인 경우 10.6년으로 일반가구 7.9년, 모자가구 5.7년 및 부자가구 4.9년보다 수급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장애유무에 따라서도 수급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장애인 가구 주의 평균수급기간이 비장애인 가구주보다 길게 나타났다.

한편, <근로가능 수급자>의 분석결과에서는 근로가능수급자의 장애유무와 가구 내 요보호가구원 유무에 따라 평균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전체의 수급기간은, 가구주가 61세 이상의 고령자, 무학, 사별, 노인가구, 장애인 경우에 평균 수급기간이 길게 나타났고, 근로가능 수급자에게서는 장애가 있거나 가구내 요보호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평균 수급기간이 다소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급자 전체와 근로가능 수급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장기 수급기간은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인구학적 및 가구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급기간

변 수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빈 도	평균	통계값	빈 도	평균	통계값	
전 체	370	8.6년		103	6.7년		
성별	남	129	7.7	t= -1.8*	31	7.8	
	여	241	9.0		72	6.2	t=1.5
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29	3.4a)b)		47	6.1	
	41세 ~ 50세 이하	91	6.6c)	F=16.5**	46	7.4	F=1.08
	51세 ~ 60세 이하	55	7.5a)d)		10	6.8	
	61세 이상	195	10.5b)c)d)		-	-	
학력	무학	103	11.3a)b)c)d)		-	-	
	국졸이하	113	8.4a)		20	7.6	
	중졸이하	62	7.3b)	F=8.1***	21	6.9	F=.42
	고졸이하	76	6.2c)		50	6.3	
	전문대 이상	16	7.8d)		12	6.7	
결혼 상태	미혼	22	8.5		27	7.2	
	기혼	68	7.5a)	F=7.46***	44	6.5	F=.17
	사별	174	10.2a)b)		13	6.7	
	기타(이혼, 별거 등)	106	6.6b)		19	6.6	
장애 유무	장애	90	8.6	t = 2.5*	22	8.3 (4.9)	t=1.89†
	비장애	280	8.5		81	6.3 (4.3)	
가구 유형	일반가구	76	7.9a)		51	6.6	
	노인가구	148	10.6a)b)		-	-	
	모자가구	77	5.7b)	F=7.3***	23	5.6	F=1.91
	부자가구	15	4.9b)		5	5.9	
	장애인가구	44	8.9		19	9.1	
	기타가구	10	8.5		5	5.3	
요보호 가구원	있다	72	9.1	t= .24	23	8.4	t=2.1*
	없다	298	8.4		80	6.2	
수급 유형	일반수급	321	8.9	t=.05 †	75	6.8	t= .18
	조건부수급	49	6.4		28	6.6	

* p< .10 *p < .05, **p < .01, ***p < .001

2) 현금급여의존율

객관적 측면에서의 복지의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월평균 가구 총수입 가운데 공공부조에 의해 지원되는 현금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함으로서 현금급여의존율이 어느정도에 이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전체 공공부조수급 가구의 월평균 현금급여액은 319.9천원이었으며, 85% 정도가

50만원 미만의 현금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현금급여액이 가구 월평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평균 급여의존율이 7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50% 미만의 현금급여 의존은 25.9%, 50%이상 70% 미만의 현금급여 의존은 6.8%, 70% 이상 100% 미만의 현금급여 의존은 8.6%였고 임금소득이 없는 216가구(58.4%)의 급여의존율은 100%였다.

보통 급여의존율이 70% 이상이면 유의미한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있다고 간주되는데 (HM Treasury, U.K., 1997 ; Neil, 2001 재인용),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70% 이상의 급여의존율을 보이는 빈곤층은 68.3%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수급자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가구 월평균 총수입은 760.7천원으로 수급자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반면, 공적 현금급여액은 299.1천원으로 수급자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가능 수급자의 현금급여 의존율이 전체 수급자에 비해 낮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실제 근로가능 수급자만의 현금급여 의존율은 평균 48%였고, 73.8%가 70% 미만의 급여의존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가능 수급자 중 수입이 전혀 없었던 25명은 100% 현금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월평균 현금급여액 및 현금급여 의존율

변 수	가구주 전체 (N = 370)		근로가능 수급자 (N = 103)	
	빈도 (%)	통계값	빈도 (%)	통계값
1. 현금급여 의존율(B/A)				
50% 미만	96 (25.9)	평균 : .77	62 (60.2)	평균 : .48
50% 이상 ~ 70% 미만	25 (6.8)	최소 : .02	14 (13.6)	최소 : .02
70% 이상 ~ 100% 미만	33 (8.9)	최대 : 1.0	2 (1.9)	최대 : 1.0
100%	216 (58.4)		25 (5.8)	
2. 월평균 가구 총수입A				
50만원 미만	226 (61.1)	평균 : 473.2천원	20 (19.4)	평균 : 760.7천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27 (34.3)	최소 : 25천원	59 (57.3)	최소 : 25천원
100만원 이상	17 (4.6)	최대 : 1,300천원	24 (23.2)	최대 : 1,934천원
3. 월평균 현금급여액B				
10만원 미만	38 (10.3)	평균 : 319.9천원	27 (26.2)	평균 : 299.1천원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33 (35.9)	최소 : 1천원	28 (27.2)	최소 : 13천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44 (38.9)	최대 : 1,031천원	29 (28.2)	최대 : 1,021천원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37 (10.0)		13 (12.6)	
70만원 이상	18 (4.9)		6 (5.8)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 현금급여 의존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주 전체>에서는 연령에 있어서 61세 이상 가구주의 급여의

존율은 90%로, 40세 이하 가구주의 급여의존율 51% 및 50세 이하 가구주의 급여의존율 64%, 60세 이하 가구주의 급여의존율 66%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이 노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자체 가구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61세 이상만 되어도 근로능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취업 기회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적 현금급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에 있어서도 무학인 경우의 급여의존율은 91%로 국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에 비해 급여의존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가구주의 급여의존율이 87%로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공공부조수급가구의 수입 출처가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구주의 장애는 경제활동참여를 어렵게 하여 공공부조수급가구의 급여의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취업여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비취업 가구주의 현금급여 의존율이 취업한 가구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노인가구의 평균 급여의존율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구 78%, 부자가구 75%, 모자가구 54%, 일반가구 5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원 유무에 따라서는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급여의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수급자의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에 따라서는 현금급여 의존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단,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금급여 의존율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를 가진 수급자가 비장애인 수급자에 비해 현금급여 의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유형에서도 장애가구와 부자가구의 현금급여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내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현금급여 의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부조수급 가구주의 현금급여 의존율은 고연령, 무학, 장애, 노인가구,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취업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고, 근로가능 수급자의 급여의존율 또한 비취업, 장애가구와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조수급자의 현금급여 의존율은 열악한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근로무능력과 비취업, 열악한 가구원 요인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자아존중감

공공부조수급자의 자아존중감은 복지의존의 주관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심리적 특성중 하나이다. 먼저, <가구주 전체>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 24.4점으로 보

통수준이었다. 평균점수가 비록 중간점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왔으나 최저 12점의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수급자도 있었고, 20점 이하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급자도 20.8%로 나타나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자아존중감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로가능 수급자>의 평균 자아존중감은 27.2점이었고, 20점 이하는 10.7%인데 비해 20점을 넘는 수급자는 89.3%로 근로가능 수급자들이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금급여 의존율

변 수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빈 도	평균	통계값	빈 도	평균	통계값
전 체	370	.77		103	.48	
성별	남	.78		31	.58	
연령	40세 이하	.51 ^{a)}		47	.42	
	40세 ~ 50세 이하	.64 ^{b)}	F=45.84**	46	.52	F=1.20
	50세 ~ 60세 이하	.66 ^{c)}		10	.55	
	61세 초과	.90 ^{a,b,c)}		-	-	
학력	무학	.91 ^{a,b,c)}		-	-	
	국졸이하	.77 ^{a)}		20	.49	
	중졸이하	.65 ^{b)}	F=9.37**	21	.59	F=1.03
	고졸이하	.66 ^{c)}		50	.44	
	전문대 이상	.83		12	.43	
장애	장애	.87	t=9.04**	22	.79	t = 5.16***
	비장애	.74		81	.39	
가구	일반가구	.62 ^{a,b)}		51	.35a)	
	노인가구	.95 ^{b,c)}		-	-	
	모자가구	.54 ^{c,d)}	F=27.5***	23	.46	F=5.98***
	부자가구	.75		5	.77	
	장애인가구	.81 ^{b,d)}		19	.69a)	
	기타가구	.76		5	.77	
요보호	있다	.85	t=2.5*	23	.60 (.39)	t=1.92†
	없다	.75		80	.44 (.34)	
취업여부	취업	.37	t=-16.6***	44	.32 (.22)	t= -4.66***
	비취업	.88		59	.59 (.39)	
수급 유형	일반수급	.82	t=9.0***	75	.56 (.37)	t=5.15***
	조건부수급	.41		28	.26 (.19)	

** p < .01, *** p < .001

<표 7> 공공부조수급자의 자아존중감 ($n=74$)

구 분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N (%)	평균 (표준편차)	N (%)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0 (100%)	24.37 (6.0)	103 (100%)	27.20 (5.28)
20점 이하	77 (20.8%)	최소 12	11 (10.7%)	최소 12
20점 초과	293 (79.2%)	최대 39	92 (89.3%)	최대 37

공공부조수급자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가구주 전체>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을 수록(61세 이상 23.5점) 젊은 가구주에 비해(40세 이하 26.9점)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학력에 따라서도 무학인 경우가 22.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학력일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가구주의 장애여부는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한 가구주가 비취업 가구주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가능수급자>의 경우도 연령과 학력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고, 젊은 연령, 고학력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인 수급자가 다른 결혼상태에 있는 수급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가능수급자의 장애여부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었는데,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장애인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공부조수급자 가운데서도 고연령, 낮은 학력수준, 장애, 비취업 등의 요인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 수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N	평균	통계값	N	평균	통계값
전체	370	24.3		103	27.2	
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29	26.9a)	47	29.2a)b)	
	40세 ~ 50세 이하	91	25.4	46	25.5a)	
	50세 ~ 60세 이하	55	24.1	10	25.3b)	$F=5.57^{***}$
	61세 이상	195	23.5a)	-	-	

<표 8> 계속

변수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N	평균	통계값	N	평균	통계값
	전체	370	24.3		103	27.2	
학력	무학	103	22.4a)b)c)		-	-	
	국졸 이하	113	24.5		20	25.1a)	
	중졸 이하	62	25.0a)	F=5.8***	21	24.6b)	F=4.76**
	고졸 이하	76	25.4b)		50	28.3	
	전문대 이상	16	28.6c)		12	30.8a)b)	
결혼	미혼	22	23.3		27	30.2a)	
	기혼	68	24.8	F=1.25	44	26.0a)	F=3.35*
	사별	174	23.9		13	26.0	
	기타(이혼, 별거 등)	106	25.1		19	26.5	
장애	장애인	90	23.2	t= -2.1*	22	24.2	t= -2.8**
	비장애인	280	24.7		81	28.0	
가구유형	일반가구	76	24.7		51	27.5	
	노인가구	148	23.5		-	-	
	모자가구	77	26.1	F=3.0*	23	28.0	F=.78
	부자가구	15	26.1		5	24.0	
	장애인가구	44	22.7		19	25.8	
	기타	10	25.9		5	28.2	
취업여부	취업	82	26.9	t=4.5***	44	27.5	t=.47
	비취업	288	23.6		59	26.9	
수급유형	일반수급	321	24.1	t= -1.9†	75	26.8	t= -1.17
	조건부수급	49	25.9		28	28.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일에 대한 태도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복지의존의 주관적 측면 중 태도나 가치를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된 척도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조수급 가구주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는 55점 만점에 평균 43.1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일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도 독립/자

립 영역이 평균 23.3점, 일 자체에 대한 생각이 12.3점, 근면과 성공에 대한 생각이 7.6점으로 모두 상위 77% 이상의 점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근로가능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도 44.0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하위요인별 점수에서도 가구주 전체 평균 점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구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수급기간이 8.6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이고, 현금급여 의존율 또한 77% 이상의 높은 급여 의존율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 일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온 결과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근로윤리나 일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 수급자의 높은 일에 대한 태도는 공공부조 수급이 자립의지나 일 태도를 저해하여 취업을 회피함으로서 공공부조급여에 대한 의존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

<표 9>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alpha = .79$)

구 분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N (%)	평균 (표준편차)	N (%)	평균 (표준편차)
	370 (100%)	43.14 (7.5)	103 (100%)	44.03 (6.5)
하위요인별 평균	독립/자립(30) 일 자체(15)	근면과 성공(10)	독립/자립(30) 일 자체(15)	근면과 성공(10)
	23.3	12.3	23.8	12.5
		7.6		7.7

이는 공공부조수급자들이 여전히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태도에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급자들이 비록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들의 자립의지나 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복지수급 경험과 일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으며(Greenwell et al, 1998), 오히려 복지수급자들은 복지급여보다 일을 더 선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와 실제 취업여부의 관계 역시 분명하지 않다는 (Edin & Lein, 1996) 일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조사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장애유무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취업경력이 오래될 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Tang & Smith-Brandon, 2001)와는 달리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의 경우 취업한 수급자라도 비취업자 보다 일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들의 현재 취업환경이나 경제활동으로부터의 보상이 취업자들로 하여금 비취업 보다 높은 일에 대한 태도를 지속시킬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으로 짐작되어진다.

근로가능 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자활사업의 목적을 '근로의욕 고취'에 두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환경에 대한 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일에 대한 태도

변수		가구주 전체			근로가능 수급자		
		N	평균	통계값	N	평균	통계값
전체		370	43.1		103	44.0	
성별	남	129	43.3		31	42.5	
	여	241	43.3	t=.39	72	44.7	t= -1.58
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29	43.9		47	43.4	
	40세 ~ 50세 이하	91	43.8	F=.76	46	44.6	F= .44
	50세 ~ 60세 이하	55	41.9		10	44.6	
	61세 이상	195	43.0		-	-	
학력	무학	103	42.3		-		
	국졸 이하	113	43.1		20	43.4	
	중졸 이하	62	42.6	F=1.07	21	42.7	F= .58
	고졸 이하	76	44.3		50	44.7	
	전문대 이상	16	45.1		12	44.6	
결혼	미혼	22	40.3		27	43.5	
	기혼	68	44.3	F=1.66	44	44.4	F= .09
	사별	174	42.9		13	44.0	
	기타(이혼, 별거 등)	106	43.4		19	44.0	
장애	장애인	90	42.9	t= -.28	22	42.6	t= -1.13
	비장애인	280	43.2		81	44.4	
가구유형	일반가구	76	44.6		51	44.2	
	노인가구	148	42.7		-	-	
	모자가구	77	42.7	F= .92	23	44.3	F= .20
	부자가구	15	44.6		5	45.8	
	장애인가구	44	42.6		19	43.2	
	기타	10	41.7		5	43.0	
현재 취업여부	취업	82	43.3	t=.47	44	43.7	t= -.46
	비취업	288	43.1		59	44.3	
수급유형	일반수급	321	43.1	t=.06	75	44.1	t= .26
	조건부수급	49	43.1		28	43.7	

3. 복지의존 하위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금까지는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 자아존중감 및 일에 대한 태도라는 복지의존의 네 개 하위변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전체>의 복지의존 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언급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의 수급기간(평균 8.6년), 높은 현금급여의존율(평균 77%)과 중간수 준의 자아존중감(40점 만점 중 24.4점), 높은 수준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55점 만점 중 44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조수급자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 및 가구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중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노인 단독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가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평균 52세)에서 공공부조 수급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했고 자아존중감 역시 낮아진 상태에서 진입했다. 그리고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는 연령이나 학력,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일에 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전히 일을 통한 자립 의지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이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오히려 복지의존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수급기간은 6.4년, 현금급여 의존율은 48%로, 근로가능 수급자가 장애이거나 가구내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기간이 길거나 현금급여 의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 이상의 자아존중감 (27.2점) 및 높은 수준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44점)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 두드러진 복지의존 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지의존의 네 측면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복지의존의 개념구조에 따르면 수급기간은 현금급여 의존율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 역시 정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복지의존의 객관적 측면(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과 주관적 측면(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은 상호 부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급자 전체와 근로가능 수급자의 복지의존 네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전체>의 복지의존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총 6개의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특징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즉 장기 수급기간은 높은 급여의존율과 관련이 있고($r = .24$),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r = .55$), 장기 수급기간은 낮은 자아존중감과($r = -.12$), 높은 현금급여 의존율은 낮은

자아존중감과($r=-.20$) 관련이 있었다. 한편, 수급기간과 일에 대한 태도 및 현금급여 의존율과 일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 검증력을 보인 상관관계라 해도 이들 계수 값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r=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에서 그 관계성은 매우 미미한 정도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로가능 수급자>의 복지의존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사이에만 정적인 상관관계($r=.37$)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는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과 어떠한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과 같은 복지의존의 객관적 측면은 수급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일에 대한 태도와 같은 주관적 특성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복지의존의 이론적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에게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11>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복지의존 변수간 상관관계 ($N=370$)

변 수	평균(표준편차)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
수급기간	8.6 (6.6)	1	.24**	-.12**	-.05
현금급여 의존율	.77(.33)		1	-.20**	-.03
자아존중감	24.4(6.0)			1	.55**
일에 대한 태도	43.14(7.5)				1

** $p < .01$

<표 12> 근로가능수급자의 복지의존 변수간 상관관계 ($N=103$)

변 수	평균(표준편차)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
수급기간	6.7 (4.5)	1	.15	-.13	.05
현금급여 의존율	.48 (.36)		1	-.06	.04
자아존중감	27.2 (5.9)			1	.37**
일에 대한 태도	44.0 (6.5)				1

**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구 여러 나라의 복지개혁에 있어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의존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서 새로운 정책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부조 수급 가구주의 최초 진입연령은 평균 52세로 비교적 고연령층이며, 노인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일제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의존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수급자에게서 복지의존은 문제화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 수 있었다.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전체에서 나타난 장기 수급기간과 높은 현금급여 의존율은 수급자의 열악한 인구학적 및 가구,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특징이었다. 또 공공부조수급 가구주 전체의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이었고 일에 대한 태도도 매우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가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또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급자 전체와 비교해 볼 때도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에서 눈에 띠게 낮았고,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급기간이나 현금급여 의존율이 자아존중감이나 일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부정적인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수급자에게서 복지의존은 아직까지 문제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의 제한점과 연구과정을 통해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복지의존 변수인 수급기간, 현금급여 의존율, 자아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는 이들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횡단면 연구방법으로는 급여의존율에 따라 수급기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급여의존율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수급기간의 변화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변화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분석할 수 없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패널자료 분석 등 종단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복지의존의 변화과정 내지는 복지의존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정책현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지의존적 사례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존적 사례는 양적 규모뿐 아니라 적은 수라도 어떠한 원인과 경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내용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취함으로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후속연구로 공공부조수급자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공공부조수급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의존적 생활 태도가 발견되는지 등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04. “소득이전 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곤. 2001. “수급자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와 자립 적립금 제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60호. 2001.10. 보건사회연구원. pp. 35~46.
- _____.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7호 2002.5. pp.51~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2001.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0호. 2001.10. pp.47~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3. “근로빈계재충과 자활지원정책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7호 2003.3. pp.9~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 2003. “근로유인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4호. 2003.10. pp.54~6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윤영. 1998.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생활보호대상자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0-2001)」 .
- _____. 2003.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I) · (II)
- 유태균. 2003.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Vol. 22. pp161-199.
- 이원익. 1999.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피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eng Tyrone. 2002. "Welfare recipients : How do they become independent?". Social Work Research. Vol. 26(3).
- Delores Elaine Connor Cleary. 1997. "Patterns of welfare dependency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on AFDC,"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hD.
- Dolinsky, Arthur L., Fichard K. Caputo, and Patric O'Kane. 1989. "Competing effects of Culture and Situation on Welfare Receipt." Social Service Review, September, pp. 359~371.
- Edin, K., & Lein, L. 1996.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dwards, M.E., Plotnick, R., Klawitter, M. 2001. "Do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 affect socio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us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82(4). pp.817~827.
- Fraser Nancy & Gordon Linda. 199). "A Genealogy of Dependency : Tracing a Keyword of the US Welfare".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19(2).
- Garfinkel, I., and McLanahan, S. S. 198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New American Dilemma.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Gottschalk, Peter & Moffitt, Robeat A. 1994. "Welfare Dependence : Concepts, Measures, and Trend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2, pp. 38~42.
- Hoynes, Hilary & Macurdy, Thomas. 1994. "Has the Decline in Benefits Shortened Welfare Spell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2). pp. 43~48.
- Kalil, Ariel & Schweingruber, Heidi A & Seefeldt, Kristin S.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9(5). pp.701~723.
- Krinitzky, N. 1990. Welfare dependenc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Puerto Rican women in New York City.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Kunz, James & Ariel, Kalil. 1999.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elfare use". Social Work Research. Vol. 23(2).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 Mead, L. 1992. The new politics of poverty: The nonworking poor in America. New York:Basic Books.
- Moynihan, D. P. 1973. The Politics ora Guaranteed Income: The NIxon Administration and the Family Assistance Plan, New York, Random House.
- Nakazato, Seisaku. 1992. "The nature and extent of welfare dependency," The American University. MA.
- Neil, Turton. 2001. "Welfare bebefits and work disincentives". Journal of Mental Health. Vol.10(3). pp. 285~300.
- Noel and Rita Timms. 1982. Dictionary of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Raul. pp.55-56.
- Ono, Hiromi & Becerra, Rosina M. 2000. "Race, ethnicity and nativity, family struc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welfare dependenc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4(3). pp. 739~765.
- Robert L. Barker. 1987. The Social Welfare Dictionary.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40
- Smiley, Marron. 2001. "Welfare Dependence : The Power of a Concept", Thesis Eleven, Number

64. February 2001 : 21-38.
- Smith R. Steven. 2001. "The "problem of dependency" and the mythology of independent living". Florida State University, Vol. 27(4). pp. 579~598.
- Susan A. Touchton-Cashwell. 1999. "Reducing welfare dependency and self-sufficiency : Dependency targets of former rural welfare mother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PhD.
- Susan Fooks. 1999. "Welfare dependency," Family Matters, No. 54, pp. 1~88.
- Tanner, M., Moore, S.H., David. 1997. "Welfare pays better, so why work?". The Magazine of the American Scene. Vol.125(2622). pp.22~24.
- Tang Li-Ping Tomas., Smith-Brandon, Vancie. 2001. "From welfare to work : The endorsement of the money ethic and the work ethic among welfare recipients, welfare recipients in training programs, and employed past welfare recipient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 30(2). pp. 241~260.
- Titmuss, Richard M. 1959. Essay on 'The Welfare Stat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Zinn, D.K. 1984. Welfare dependency as political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경향신문. 2000. 5월6일. 13면.
- 중앙일보. 2000. 3월9일. 37면
- 종아일보. 2001. 3월19일. 3면.
- <http://www.seoul.or.kr>